

[별표 14] <개정 2017. 6. 2.>

**수수료 및 비용**(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

1. 인증기관 지정신청의 경우

50만원(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: 10만원)

2. 인증심사,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경우

구 분	금 액
가. 기본수수료	○ 인건비, 사무실 운영비, 감가상각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(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)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
나. 인증심사원 출장비	○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. ○ 출장기간은 제품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에 필요한 일수, 서비스인증의 경우에는 사업장심사에 필요한 일수 및 서비스심사에 필요한 일수(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의 과반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)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, 출장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.
다. 공장심사비	○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(만원 단위 미만 절사)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 다만,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 ○ 공장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, 공장심사비의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. 다만,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공장심사비로 추가할 수 있다.
라. 제품시험 수수료	○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
마. 시료 운반·조작비	○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
<p>&lt;비고&gt;</p> <p>1. 별표 9 제1호사목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에 따른 비용은 인증기관이 부담한다.</p> <p>2.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4 제2호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.</p>	